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25

발의연월일: 2020. 7. 3.

발 의 자: 박주민 · 윤재갑 · 문진석

이낙연 • 류호정 • 박성준

이탄희 · 김두관 · 양정숙

홍영표 • 양이원영 • 주철현

김용민 · 오영환 · 권인숙

이워택 • 김경만 • 김철민

김영배 · 권칠승 · 김상희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헌법 제32조 제2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며, 제36조 제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성권의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함.

그러나 지금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태아를 유산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지만 태아가 선천성 질병이 있는 아이로 출생한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20년 4월 29일, 임신 중인 여성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선천성 질병이 있는 아이를 낳았다면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음.

이에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태아가 그 근로자의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건강이 손상되었을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국가의 모성권 보호 의무를 대법원 판례에서나아가 입법화 하여 실현하고자 함(안 제5조제1호, 제36조제5항 및 제63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근로자"를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출산한 친생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태아의 부상이나 사망은 제외한다.

제36조제5항 중 "특이하여"를 "특이하거나 친생자의 업무상의 재해로서"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근로자의 업무 환경이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친생자에게 발생한 질병

제40조제1항 중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 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한 경우
- 2. 근로자와 그가 출생한 친생자가 질병에 걸린 경우

제57조제1항 중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한 경우
- 2. 근로자나 그가 출생한 친생자가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 에 장해가 있는 경우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근로자와"를 각각 "근 로자나 친생자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5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1
사유에 따른 <u>근로자</u> 의 부상·	<u>근로자 또는</u>
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	근로자가 출산한 친생자
다. <u><단서 신설></u>	<u>다만, 태아의 부상이나 사</u>
	망은 제외한다.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 ④ (생 략)	기준 등) ① ~ ④ (현행과 같
	<u></u> 수
⑤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및	⑤
진폐유족연금은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u>특이하여</u> 평균임금을	특이하거나 친생자의 업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	<u>무상의 재해로서</u>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	
임금으로 한다.	
	<u>.</u>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1. (생략)
- 2. 업무상 질병 가. ~ 다. (생 략) <신 설>

<u>라.</u> (생 략) 3. (생 략)

② ~ ⑤ (생 략)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 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 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신 설>

<신 설>

② ~ ⑥ (생 략)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
준) ①
1. (현행과 같음)
2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근로자의 업무 환경이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친생자에게 발생한 질병
<u>마.</u> (현행 라목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0조(요양급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u>하는 경우</u>
1.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한 경우
2. 근로자와 그가 출생한 친생
<u>자가 질병에 걸린 경우</u>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 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 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 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 한다.

<신 설>

<신 설>

② ~ ⑤ (생 략)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 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제57조(장해급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u>.</u>
1.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한 경우
2. 근로자나 그가 출생한 친생
자가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의 범위) ①
<u>근로자나 친생자와</u>
근로자나 친생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